

2024. 1. 12. 호봉획정방법 변경에 따른 재직자 호봉 재획정

※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19525호 시행 2024. 1. 12.) 개정사항 반영

가. 근 거 : 공무원보수규정(대통령령 제34099호 개정 2024. 1. 5.) 별표 15, 별표 16,
별표 17, 별표 19, 별표 22

나. 대 상 :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으로 별표 3·3의2·4·5·6·8·10·11·12의 봉급표를
적용받는 공무원

다. 인정경력 : 대체역, 예술체육요원·산업기능요원·전문연구요원,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경력

라. 호봉 재획정일 : 2024. 1. 12.

※ 재획정 실무작업이 재획정일 후로 늦어지는 경우, 2024. 1. 12. 기준으로 재획정 및 급여
소급 지급(일할계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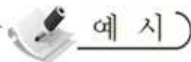
마. 호봉 재획정 방법 및 절차

-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경력합산신청서와 병적증명서·
경력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전력조회(필요시)* 완료 후 호봉 재획정
* 증명서의 내용이 불확실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전력조회 실시
- 다만, 해당 경력을 이미 다른 유사경력(민간경력 등)으로 인정받은 바 있어 호봉 및
잔여기간에 변동이 없거나, 변경된 초임호봉표 및 경력환산율표를 적용하는 것이
종전보다 불리해지는 경우에는 재획정 대상에서 제외(종전 호봉 그대로 적용)



예 시)

1. '21. 1. 12. 신규임용(9급 1호봉, 잔여기간 0일)되어 '24. 1. 12. 현재 9급 3호봉(잔여기간 12월)인 자가 임용 전 산업기능요원으로 2년 10개월 근무한 경력(초임호봉 획정 당시 호봉 경력으로 미반영)이 있는 경우, 호봉 재획정 방법은?
- '24. 1. 12. 기준, 기존 공무원 재직경력(3년)에 산업기능요원 경력(2년10월)을 합산
☞ '24. 1. 12. 재획정 결과 : 9급 6호봉(잔여기간 10월)



예 시)

2. 전문연구요원으로 3년 근무한 경력을 민간경력으로 100% 인정받았던 자['21. 1. 12. 9급 4호봉 신규임용, '24. 1. 12. 현재 9급 6호봉(잔여기간 12월)]에 대한 호봉 재획정 방법은?
☞ 호봉 및 잔여기간에 변동이 없으므로 재획정 불필요